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30
----------	-----

2015년 6월 24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년 6월 10일, 최영수 의원 외 18명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5년 6월 24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최영수 의원)

가. 제안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본 조례에 따르면 저공해의무대상 자동차를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 비고 제6호에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출고된 일부 차량에 대하여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토록 유예한바 있음.

- 이에 따라 환경부의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동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도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이들 차량에 대해서도 저공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나. 주요골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이하 특정경유차)가 확대됨으로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2조, 별표 1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 가.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시 대기 질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서울시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대기환경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의 대기오염원을 살펴보면 63%가 자동차 등 수송부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중의 하나로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사업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저공해엔진(LPG) 개조, 노후차 조기폐차 등으로 지난해까지 7,607억원의 예산을 들여 278,519대의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표 1〉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실적

구 분	저 공 해 화 추 진 실 적 (단위 : 대)						
	계	'09	'10	'11	'12	'13	'14
집행액(억원) (시비)	7,607 (3,782)	5,053 (2,505)	800 (400)	570 (285)	472 (236)	456 (228)	256 (128)
합 계 ( 대 )	278,519	177,439	30,825	24,114	16,401	17,256	12,484
저 감 장 치 부 착	146,534	95,130	17,461	14,961	7,617	7,738	3,627
L P G 개 조	68,203	56,877	7,922	2,074	961	277	92
조 기 폐 차	63,006	25,432	5,442	7,079	7,823	8,797	8,433
삼 원 촉 매 장 치 부 착	527					378	149
P M - N O x 동시저감장치	106					62	44
건 설 기 계 엔 진 교 체	143					4	139

- 현재까지 저공해화 사업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되어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등록된 자동차 중에서 2005년 12월 31일자 이전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27,315대의 경유자동차만을 사업 대상차량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큰 이견은 없음.

#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태양광, 수소연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제3항제1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천연가스 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터리, 그 밖의 장치·부품
-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 ⑦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 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 ⑧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⑩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⑪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13.4.5.>
- ⑫ 제11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3., 2013.4.5.>
- ⑬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법 제46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제71조,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가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

2. 경유사용 자동차

가. ~ 다. (생략)

라. 2002년 1월 1일 이후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매연	측정방법	
경자동차·승용1	0.5g/km 이하	0.02g/km 이하	0.01g/km 이하	0.01g/km 이하	15% 이하	CVS-75 모드	
화물 1	0.8g/km 이하	0.65g/km 이하	0.07g/km 이하	0.07g/km 이하	15% 이하		
승용2	가	0.95g/km 이하	0.65g/km 이하	0.08g/km 이하	0.07g/km 이하		15% 이하
	나	0.95g/km 이하	0.75g/km 이하	0.08g/km 이하	0.09g/km 이하		15% 이하
승용3·화물2	0.95g/km 이하	0.78g/km 이하	0.08g/km 이하	0.10g/km 이하	15% 이하		
승용4·화물3	2.1g/kWH 이하	5.0g/kWH 이하	0.66g/kWH 이하	0.10g/kWH 이하	15% 이하 및 K=0.8m-1	ND-13 모드	

※비고

-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 승용2의 '가'란은 시험중량이 1.7톤 이하인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란은 시험중량이 1.7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승용2·승용3·화물1 및 화물2와 2002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승용4 및 화물3은 위 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2005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경자동차·승용1 및 2004년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승용2의 '가'란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매연	측정방법
경자동차·승용1	0.64g/km 이하	0.50g/km 이하	0.56g/km 이하	0.05g/km 이하	15%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승용2 가						

- 매연의 측정은 출고 시의 기준으로 하되, 무부하급가속 측정방법으로 하고 과급기(Turbo Charger) 및 중간냉각기(Intercooler)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5%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승용4 및 화물3의 K수치는 제작 시의 기준으로 하되, 원동기 가동상태의 부하측정방법(ELR)으로 측정한다.
- 2004년 7월 1일부터 블로바이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을 0g/1주행으로 하여 적용한다.
-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로부터 90일(화물3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마. 2006년 1월 1일 이후

차종	구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매연	측정방법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0.50g/km 이하	0.25g/km 이하	0.30g/km 이하	0.025g/km 이하	10%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소형 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RW ≤ 1,305kg	0.50g/km 이하	0.25g/km 이하	0.30g/km 이하	0.05g/km 이하	10% 이하	
	1,305kg < RW ≤ 1,760kg	0.63g/km 이하	0.33g/km 이하	0.39g/km 이하	0.04g/km 이하	10% 이하	
RW > 1,760kg		0.74g/km 이하	0.39g/km 이하	0.46g/km 이하	0.06g/km 이하	10% 이하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1.50g/km 이하	3.5g/km 이하	0.46g/km 이하	0.02g/km 이하	10%이하 K=0.5m-1	ND-13모드
		4.0g/km 이하	3.5g/km 이하	0.55g/km 이하	0.03g/km 이하	-	ETC 모드

※ 비고

1. 경유자동차는 경유에 따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소형승용 중 차량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소형화물차 및 중형승용차·화물차의 기준을 적용한다.
3. RW(Reference Weight)는 시험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100kg을 더한 수치로 한다.
4. 블로바이(Blow-by)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을 0g/1주행으로 하여 적용한다.
5. 위 표의 매연 측정은 출고 시를 기준으로 무부하급가속 측정방법으로 하며,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의 K수치는 제작 시를 기준으로 원동기 가동상태의 부하 매연측정방법(ELR)으로 측정한다.
- 6. 2006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차량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소형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중형승용차·화물차, 2006년 9월 30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는 위 라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7.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만을 측정하여 적용한다.
8.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생산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화물차 및 초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9. 원동기 전부하시험에 의한 매연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유량 (L/sec)	K수치 (m-1)	유량 (L/sec)	K수치 (m-1)	유량 (L/sec)	K수치 (m-1)
42	2.26	95	1.535	150	1.225
45	2.19	100	1.495	155	1.205
50	2.08	105	1.465	160	1.19
55	1.985	110	1.425	165	1.17
60	1.90	115	1.395	170	1.155
65	1.84	120	1.37	175	1.14
70	1.775	125	1.345	180	1.125
75	1.72	130	1.32	185	1.11
80	1.665	135	1.30	190	1.095
85	1.62	140	1.27	195	1.08
90	1.575	145	1.25	200	1.065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이하 "특정경유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④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계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6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를 면제한다.

⑥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2.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⑦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장치 또는 엔진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⑨ 서울특별시장등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8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를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마목 비고 제6호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단, 건설기계 제외)중 <u>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u>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 ----- ----- ----- <u>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마목 비고 제6호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u>----- ----- ----- ----- ----- -----</p>